



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

☑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- | | |
|---|---|
|  <p>신체적 학대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</p> |  <p>정서적 학대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</p> |
|  <p>성적 학대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</p> |  <p>경제적 학대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</p> |
|  <p>방임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</p> |  <p>유기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</p> |

☑ 노인학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?

노인학대 발견 즉시 **경찰서 112**, 혹은
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
※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**법으로 보장**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
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

